

##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2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 I. 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#### <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 >

사업명	지원유형	지원내용	정부지원금 (기업 당, 최대)	모집기간	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	기초	■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	0.7억원	(1차) 1.22~2.25	
	고도화1		2억원	(2차) 4.1~4.30	
	고도화2		4억원	(3차) 6.1~6.30	
	디지털 클러스터 (일반형)	기초	■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	0.7억원	(기획기관)
		고도화1		2억원	1.22~2.25
		고도화2		4억원	(클러스터) 별도모집
	대중소 상생형	기초	■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	0.42억원	1.22~6.30
		고도화1		1.2억원	
		고도화2		4억원	
	업종별 특화	기초	■ 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	0.7억원	1.22~3.25
고도화1		2억원			
	고도화2	4억원			
	비고	*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·접수 진행 * (대중소상생형, 업종별특화)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			
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		■ 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	3억원 (유턴기업 5억원)	1.22~2.25	
스마트공장 수준확인		■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,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	80만원	(확인기관) 1.22~2.25 (참여기업) 수시(3.2~)	
스마트화 역량강화		■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	(심화) 500만원 (기본) 250만원 (원포인트) 100만원	(컨설팅기관) 1.22~2.25 (참여기업) 수시(1.22~)	
스마트 마이스터 운영		■ 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	837만원	수시(4.1~)	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		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	1.4억원	1.22~3.10	
스마트공장 사후관리		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	(긴급복구형) 5백만원 (성장연계형) 20백만원	수시(1.22~)	

\* 사업별 신청자격, 적용사항,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

## II. 주요 변경사항

사업명	구분	변경내역			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	지원유형	기존('20)	개편('21)	비고	
		고도화 (1.5억원) ⇨	고도화2 (4억원)	생산공정 실시간 제어(중간2 이상)	
		신규구축 (1억원)	고도화1 (2억원)	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(중간1)	
			기초 (0.7억원)	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·RFID 적용)	
		※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			
	사업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부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차등 적용</li> <li>* (기초) 최대 6개월 / (고도화1) 최대 9개월 / (고도화2) 최대 12개월</li> <li>*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</li> </ul>			
	모집방식	- 연중수시 모집에서 차수별 모집·선정(3차+α)으로 개편(상생형, 업종별특화 제외)			
	추진절차	기존('20)	개편('21)		
		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신청 → 과제선정	도입기업 신청 → 도입기업 선정 →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→ 공급기업 매칭 → 과제선정		
		* 고도화1(선택), 고도화2는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			
코디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유형별 코디네이터 지원(기초(필수), 고도화1(선택))</li> <li>*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선택가능</li> <li>*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</li> <li>※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, 업종별특화는 코디네이터 적용 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</li> </ul>				
클라우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(소기업, 3년→5년)</li> <li>*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</li> </ul>				
	-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				
추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: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</li> <li>-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: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</li> </ul>				
교육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</li> <li>* 스마트화역량강화,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			
로그기록	-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				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(5점) 추가</li> <li>-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 가점(3점) 추가</li> <li>-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가점(3점) 추가</li> <li>-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, CEO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이수 기업(3점) 추가</li> <li>-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(3점) 추가</li> <li>- 데이터 포맷 규격화(예, AAS 등) 적용 기업 가점(3점) 추가</li> </ul>				
	-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				
신규사업	- 디지털 클러스터(일반형) 사업 신규 추진				
로봇활용 제조혁신	가점	- '강소기업 스타트업100' 선정기업(2점) 추가			
스마트공장 사후관리	신설	-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추진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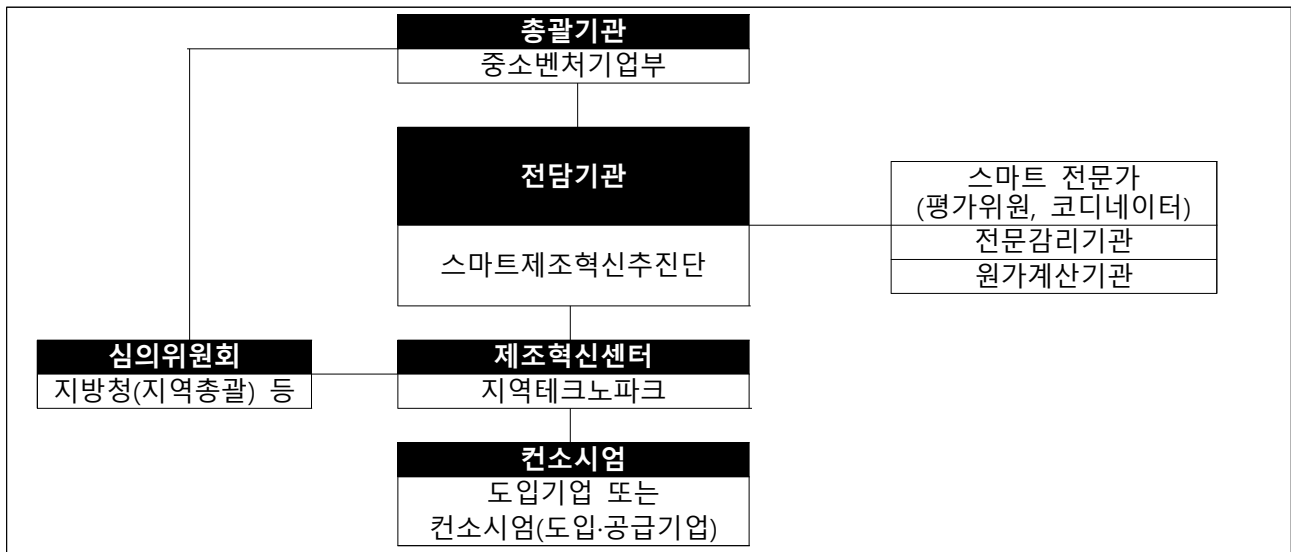
### III. 사업별 지원계획

#### (1)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(기초 · 고도화1 · 고도화2)

##### □ 사업개요

-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
##### □ 추진체계



##### □ 지원내용

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
\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  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 -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 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□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조건	정부지원금(최대)	사업기간(최대)
기초	-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'기초'에 해당 * 생산정보 디지털화(ex, 바코드·RFID 적용)	0.7억원	6개월
고도화1	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	2억원	9개월
고도화2	-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	4억원	12개월

- \*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,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(평가위원회 심의)
- \* 총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나머지는 기업부담
- \* 고도화1·2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- \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
- \*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
□ 신청자격

구분	지원유형	신청자격		코디네이터 (선택가능)		컨소시엄구성
		기업규모	목표수준	선택 가능	선택 미선택	
도입 기업	기초	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	- 기초 수준 -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	필수		도입기업 단독 신청
	고도화1		-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	선택 가능	선택	
	고도화2		-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	불가		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-공급기업 컨소시엄
공급 기업	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별도 공지)					

- \*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- \*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- \*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- \*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. 단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금)부터 차수별 신청·접수

구분	신청기간	비고
1차	- 2021년 1월 22일(금) ~ 2021년 2월 25일(목)	- 예산 조기소진 상황에 따라 차수별 모집 진행여부 변동 가능
2차	- 2021년 4월 1일(목) ~ 2021년 4월 30일(금)	
3차	- 2021년 6월 1일(화) ~ 2021년 6월 30일(수)	

\* 고도화2 사업은 2차 신청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·접수 진행
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\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별도 공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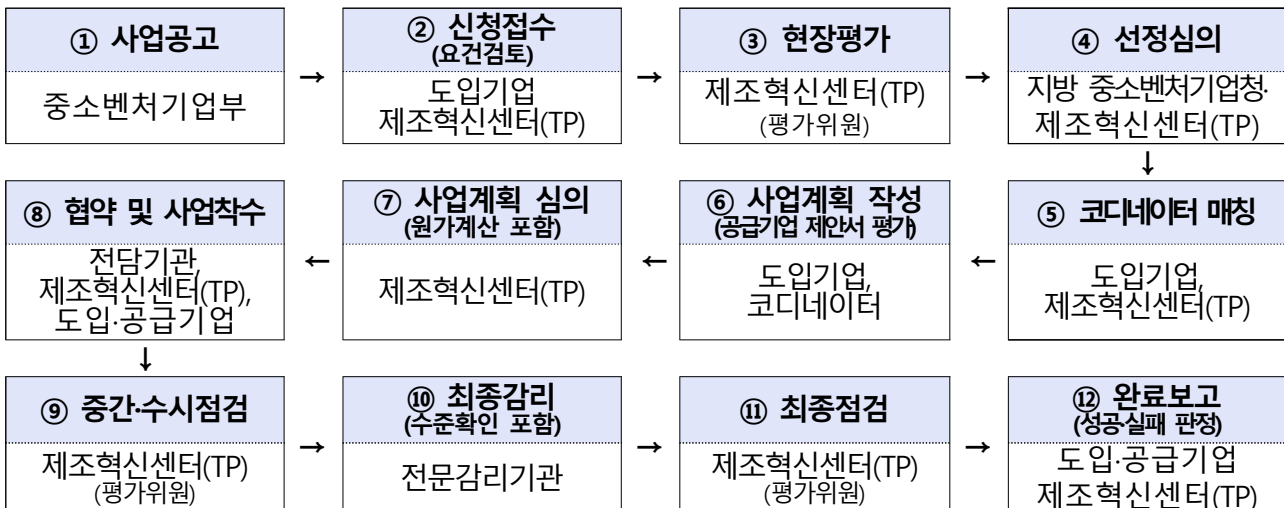
-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	
	기초, 고도화1	고도화2
1	사업신청서	사업계획서
2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
	도입기업	도입기업, 공급기업
3	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	
4	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'19년, '20년) 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<a href="http://total.kcomwel.or.kr">http://total.kcomwel.or.kr</a> )에서 발급	
5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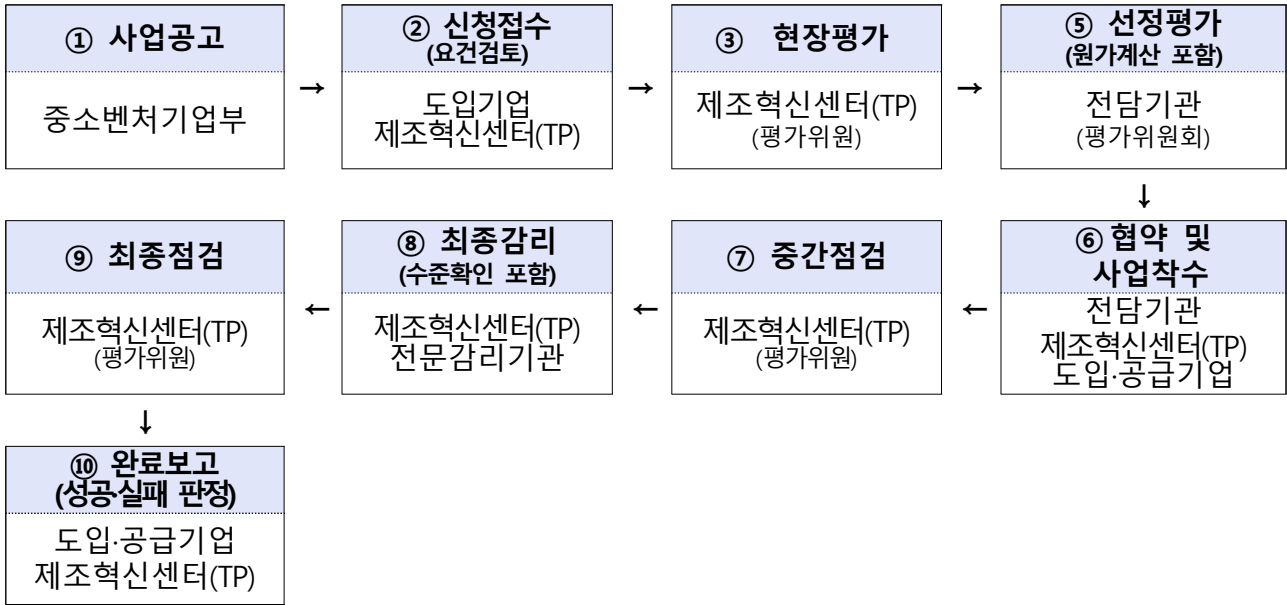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- 기초, 고도화1(선택)



○ 고도화1(선택), 고도화2

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
○ (기초, 고도화1(선택)) ① 현장평가 → ② 선정심의(선정) → ③ 사업계획 심의

구분	현장평가	선정심의	사업계획 심의
선정절차 및 방법	○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	○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 신청서 등 종합적 판정	○ 공급기업 매칭 후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(서면)
	○ 현장평가 점수(80%) 및 일자리평가 점수(20%)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	○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평가 결과 검토 후 선정여부 심의의결	○ 지역별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

<현장평가 항목>

평가 항목		배점
지원 필요성 및 추진 의지 (50)	-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	10
	- CEO 및 임원의 스마트공장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	20
	- 구축시스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	20
사업신청서 내용 및 구축 기대효과 (50)	- 사업이해도 및 참여인력 투입 방안	20
	- 구축 희망 내용의 적합성	20
	- 현장(생산/품질/설비 등) 중심의 제조데이터 수집 적합성	10
합 계		100

○ (고도화1(선택), 고도화2) ① 현장평가 → ② 선정평가(선정)

구분	현장평가	선정평가
선정절차 및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요건검토가 완료된 컨소시엄의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장평가 결과 재검토</li> <li>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 적합성을 적격/부적격으로 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평가 점수(80%) 및 일자리평가 점수(20%)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</li> </ul>

<현장·선정평가 항목>

평가 항목			배점	
현장평가	사업계획서 대조·평가	-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	적/부	
		-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(효과 측면)	적/부	
		-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(구성의 당위성 측면)	적/부	
		- 비상식·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	적/부	
	대면 평가	도입기업 역량	- CEO 및 임직원의 추진의지, 노력, 적극성	적/부
			- 업종전문성, 제품 개발 능력, 공정 기술 개발 능력	적/부
			- 고용창출 의지, 시장확대 의지	적/부
		공급기업 역량	- 고도화 필요성, 공장 확장성	적/부
			- 사업 이해 및 수행 전문성, 유사사업 구축 경험	적/부
			- 투입인력 구성 적절성 및 전문성(기술력)	적/부
선정평가	도입기업 역량	- 경영상태	5	
		- 추진의지	5	
		- 스마트화 수준	5	
	제안의 타당성	- 스마트공장 목표,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	15	
		- KPI 적절성	5	
		- 시스템의 통합성	5	
		- 도입 장비, SW 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	20	
	고도화 지원적합성	-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	10	
		- 파급효과와 보급·확산 가능성	10	
	공급기업 역량	- 사업수행 전문성	10	
		- 투입인력 적절성	10	
합 계			100	

## □ 기타사항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\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\*\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(권장)
  - \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(붙임1 참고)
  - \*\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  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  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 - \*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
  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\*,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\*\*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
  - \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정된 기업
  - \*\*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"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"를 발급받은 기업

구분	내용	적용사업
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	-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	공통 (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
유턴기업	-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	

-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은 현장평가 면제
  - \*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을 지원받은 공장(사업장)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
-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\*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
  - \* 단, '스마트화역량강화', '스마트 마이스터'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
  - \*\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3 :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]



- 스마트공장 구축\*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(기초 최대 1.4천만원, 고도화1 최대 4천만원,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
\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
\*\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
- 권소사업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
- 선정기업의 포기·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역 제조혁신센터 (TP) 주관으로 추가 신청·접수 진행
-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
-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, 공급기업, 감리기관 및 원가 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
- ※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(필수사항)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S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

## □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‘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’을 수행 중인 기업
  - \* 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, 대중소상생형, 디지털 클러스터(선도형 및 일반형) 등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\*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### < 부적격 사항 >

- |  |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
| 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
|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|
| ·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· 개별 사업공고에서 ‘신청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|                  |

□ 가점 내용 : 항목 당 3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가점항목	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
스마트공장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</li> <li>·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</li> <li>·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·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</li> <li>·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</li> <li>*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</li> </ul>
코로나19 대응 (* 가점 5점 부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 제조기업</li> <li>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)</li> </ul>
스마트 생태공장 산단대개조 산단 유턴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 *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</li> <li>·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,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</li> <li>·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(산업통상자원부)</li> </ul>
조선기자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(선박구성부분품)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 대상 납품실적* 발생업체</li> <li>* 매출처(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) 별 세금계산서 제출</li> </ul>
광주형 일자리기업	중소벤처기업부,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
뿌리기업	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'뿌리산업(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 산업)을 영위하는 기업'
위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</li> <li>* (예시)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</li> <li>* 해당부처,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</li> </ul>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</li> <li>*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(근로복지공단) 제출</li> </ul>
노동시간 조기단축	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</li> <li>·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</li> <li>*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(고용노동부) 제출 (발급일로부터 1년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</li> <li>*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(장) 확인서(고용노동부) 제출 (발급일로부터 1년)</li> </ul>
청년 친화형 산단	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,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	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,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소비재 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장품, 식품, 의약품, 생활·유아용품, 패션·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</li> <li>· 이면서, '20년도 수출실적(재무제표 상 수출액)이 있는 기업</li> <li>*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</li> </ul>
사업재편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</li> <li>* 기업활력법 종합포털(<a href="http://www.oneshot.or.kr">http://www.oneshot.or.kr</a>)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</li> </ul>
로봇 도입	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(전년도) 기업, *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
에너지신산업	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·지원사업 선정(전년도) 기업, *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
정보보호 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ISMS 인증 기업,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</li> <li>*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</li> </ul>
스마트제조 표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데이터 포맷 규격화(예 AAS 등) 및 통신방식 표준(예 IEC62541, IEC62714 등) 적용 기업</li> <li>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)</li> </ul>
여성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</li> <li>* '여성기업 확인서' 제출 필요</li> </ul>
군수품 제조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</li> <li>*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</li> <li>·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</li> <li>* 국방부 홈페이지 (<a href="https://mnd.go.kr">https://mnd.go.kr</a>) 내 국방정책→전력지원체계→군수품 상용화 확대→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</li> </ul>
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</li> <li>*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</li> </ul>

## (2) 디지털 클러스터(일반형) 스마트공장 지원

### 1 기획기관 모집

※ 본 공고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한 기획기관 모집공고이며 선정된 기획기관이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#### □ 사업개요

-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·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

#### □ 추진체계



- (전담기관) 사업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,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·승인, 사업추진 점검·평가, 사업비 교부·정산 등
- (기획기관) 클러스터 컨소시엄 수요 발굴 및 모집, 디지털 클러스터 모델 제시 및 안내,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 등
- (도입기업 컨소시엄)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, 공동·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, 컨소시엄 간 협력 등
- (공급기업 컨소시엄)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, 컨소시엄 간 협력 등

□ 지원내용

- (기획기관)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
\* 선정 된 클러스터의 총 사업비 5%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

- (도입기업) 혁신기업(벤처·스타트업 등)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,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에 대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\* 지원

\* 도입기업(10개사 이상)의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+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

□ 지원규모 : 10개 기관 내외

□ 신청자격

- 클러스터(도입·공급 컨소시엄) 수요 발굴, 전략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\*

\* (비영리기관) 연구기관, 협·단체, 지역TP 등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금)부터 2월 25일(목) 17시까지
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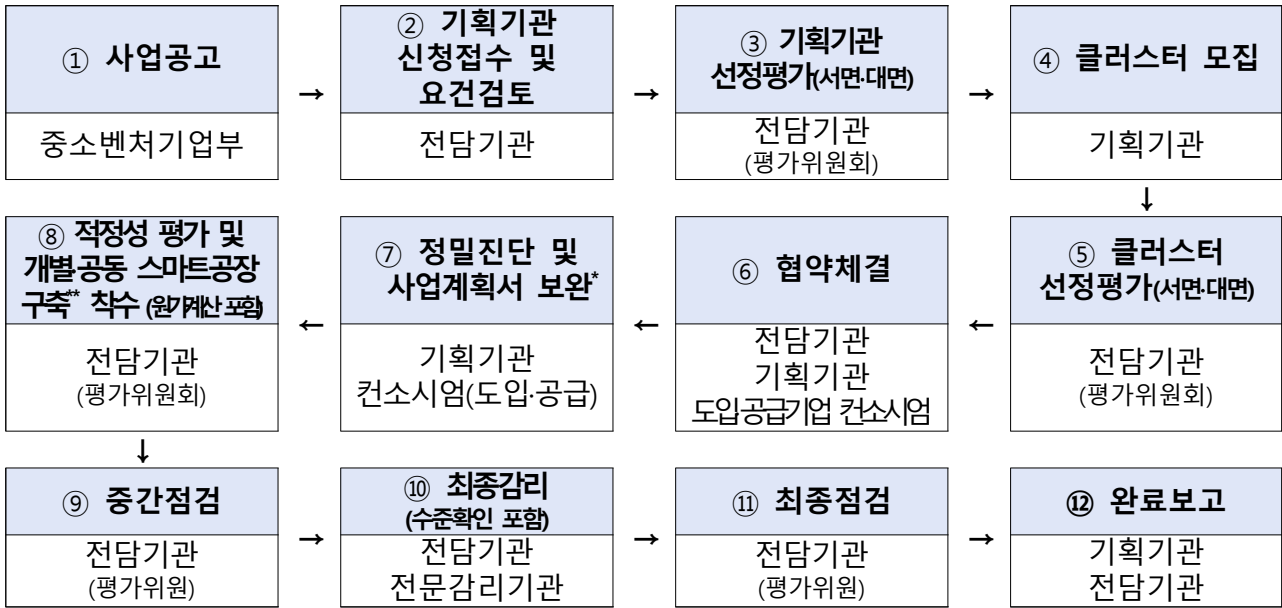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기획기관 아이디로 신청)
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
2	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
3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\* 관련양식은 <http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\* ISP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(총비용, 구축내역, 유지보수 등)을 전담기관(평가위원회)이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\*\*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(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 절차 준용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구분	선정절차	선정방법	비고
선정평가	○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기관을 평가	○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우수 기획기관을 선정	○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(7인 내외)를 구성 ○ 기획기관 총괄책임자 참석

<기획기관 선정평가>

평가항목		배점
보유역량 (30)	- 신청기관의 보유한 전문성	10
	- 추진실적 및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과의 연계성	10
	- 기관 조직의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	10
사업수행 내용 (70)	-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및 컨소시엄(도입·공급기업) 발굴 계획의 구체성	10
	-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이해도	10
	-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체계의 적정성	10
	-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방안 및 과정의 구체성	10
	- 전략수립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 및 일정의 적절성	10
	- 참여인력 및 전담 PM 지원방안의 구체성	10
	-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성	10
합계		100

## ②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모집

### □ 사업개요

-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·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

### □ 지원규모(국비) : 10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내외

-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'개별기업 →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\*' 방식으로 전환,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유·개방형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

\* (예시) 기업당 2억원 한도(고도화1 기준),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(1.4억원), 공동협업시스템 (0.6억원)  
→ 20개 기업 툰키 지원시, (개별보급) 28억원(1.4억원 x 20개) + (공동협업) 12억원(0.6억원 x 20개)

-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\*

\*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(0.7억원), 고도화1(2억원), 고도화2(4억원) 절차 준용

### □ 클러스터 구성

- 혁신기업(벤처·스타트업 등)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,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로 구성

\* (예시) 협업생산, 공동 수·발주, 공동 판로 플랫폼, 공동 물류 등

### □ 지원조건

구분	정부지원금(최대)	비고
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+ 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	- (기초) 0.7억원 - (고도화1) 2억원 - (고도화2) 4억원	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\*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

\*\*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(평가위원회 심의)

### □ 지원기간 : 최대 1년 이내

### □ 지원내용

-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

- (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) 제품 개발·생산, 원재료 관리, 유통·물류 관리, 주문·판매·서비스 관리,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

\* (예시)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+ 공유·개방형 플랫폼 구축 +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(스마트 센서·부품 등 적용), 네트워크 구축

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

구분	지원내용	비고
기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</li> </ul>	기초 수준 및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
고도화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</li> <li>- 생산공정 및 제조회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</li> </ul>	중간1 수준 구축 예정 기업
고도화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</li> <li>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</li> </ul>	중간2 수준 구축 예정 기업

\*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
## □ 신청자격

- 도입\*·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컨소시엄\*\*을 이루어 사업신청

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\*\* 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: 도입기업 10개사 이상

- (도입기업 컨소시엄)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·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(공급기업 컨소시엄)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·장비 구축, 공급기업 간 협력 등

\*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풀(pool) 모집으로 사전 등록된 기업에 한함

□ 신청기간 : 기획기관 선정 후 별도 모집 예정

□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\*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공급기업 풀(pool) 모집으로 별도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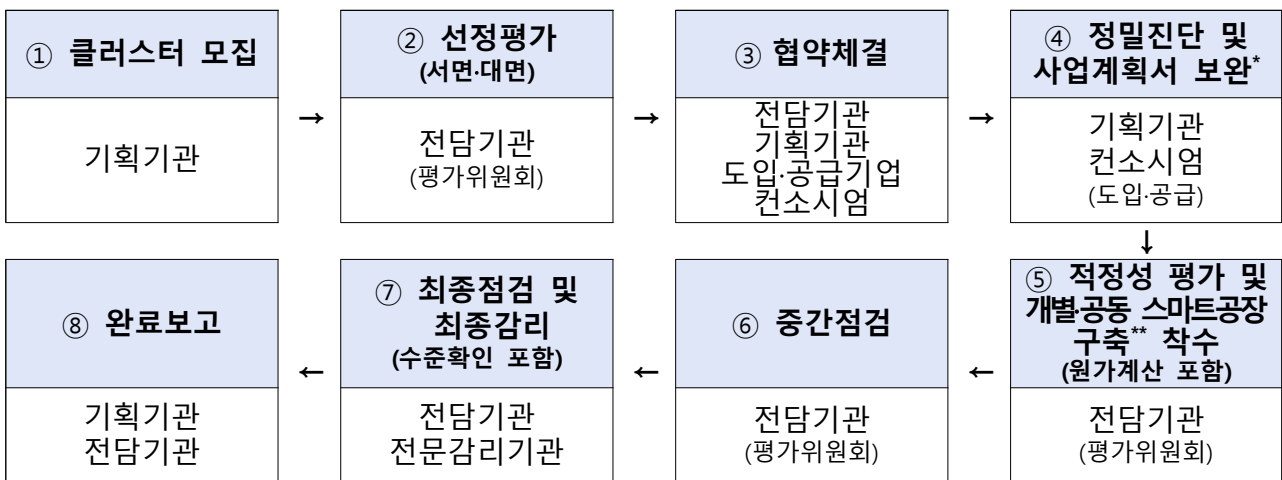
□ 제출서류
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컨소시엄 (도입·공급 기업)	사업계획서
	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*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	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*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	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각 1부('19 , '20) 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 <a href="http://total.kcomwel.or.kr">http://total.kcomwel.or.kr</a> )에서 발급
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	지자체 지원금 매칭 협약서 1부(해당시)
	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(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)
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\* ISP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(총비용, 구축내역, 유지보수 등)을 전담기관(평가위원회)이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\*\*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(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 절차 준용



## 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① 선정평가 → ② 적정성 평가

구분	선정절차	선정방법	비고
선정평가	○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평가	○ 서면대면평가 점수(80%) 및 일자리평가 점수(20%)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	○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(7인 내외)를 구성
적정성 평가	○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에 대한 수정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	○ 적정성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선정	○ 컨소시엄(도입·공급) 및 기획기관 총괄책임자 각 1명(총 3명) 참석

$$* \text{일자리평가 점수 산출} = \frac{\text{대표 및 참여기업의 일자리평가 점수 합계}}{\text{기업수}}$$

☞ 동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
 \* 제출예정일 : '21년 5월중(해당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)

### <선정평가 및 적정성 평가 항목>

평가항목			배점
선정 평가	도입기업 컨소시엄 (50)	- 사업 추진배경 및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연계 필요성	10
		- 구축 목표 및 참여기업 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	10
		- 핵심지표(KPI)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·정량적 기대효과	10
		- 디지털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	10
		- 지속가능성 및 고용창출,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	10
	공급기업 컨소시엄 (50)	- 컨소시엄 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전략의 적절성	10
		- 사업수행 전문성	10
		-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	10
		- 구축 시스템(S/W) 및 시설·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	10
		- A/S,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	10
<b>합계</b>			<b>100</b>
적정성 평가	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내용	- 사업계획 수정·보완·개선 및 구체화 수준	20
		- 실행 전략·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
		- 구축·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	10
		-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(KPI)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	10
		- 고용창출,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	10
		- 동일·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	10
		- 구축 시스템(S/W) 및 시설·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	10
		- 사업비 구성·배분의 적절성	10
		- A/S,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	10
<b>합계</b>			<b>100</b>

## □ 기타사항

- 컨소시엄 구성 시,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
  - \* 단,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도입기업 컨소시엄(제조기업 기준)은 10개사 이상 참여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\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\*\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(권장)
  - \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(붙임1 참고)
  - \*\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  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  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 - \*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
  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-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\*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
  - \* 단, '스마트화역량강화', '스마트 마이스터'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
  - \*\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3 :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]
- 스마트공장 구축\*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(기초 최대 1.4천만원, 고도화1 최대 4천만원,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  - \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  - \*\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- 컨소시엄 내 상생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, 분쟁·갈등 방지,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
  - \* 적정성 평가시, 증빙자료 제출(추진절차 참고, 선정 후 별도 안내)

-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

□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「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」을 수행 중인 기업
  - \* 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, 대중소상생형, K-스마트등대공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)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	
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	

□ 가점 내용 : 항목 당 3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- \*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(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)사업의 가점 항목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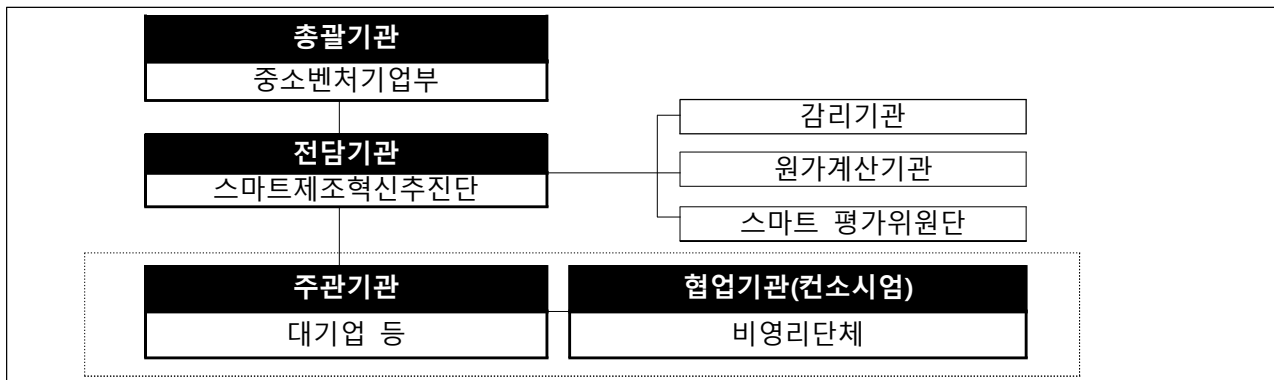
### (3)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(대기업 등) 모집

※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중소·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 [또는 협업기관]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.

#### □ 사업개요

-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

####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전담기관) 주관기관 모집·선정, 사업관리 및 운영, 구축지원, 사업완료 점검,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
- (주관기관) 지원금 출연, 사업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전문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
- (협업기관) 정부-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사업비 집행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
#### □ 지원내용

-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\*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  - \*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AI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-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
□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

- (신청자격)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  -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- (우대요건) 중소·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, 중소·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

□ 지원조건

- (유형 1) 주관기관과 중소·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%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%(최대 1.2억원) 지원
  - 기초(기초수준) : 최대 0.42억원, 총 사업비의 30% 이내 지원
  - 고도화1(중간1 수준) : 최대 1.2억원, 총 사업비의 30% 이내 지원

구분	정부	대기업	중소·중견기업
총 구축비용	30%	70%	
		30%이상	40%이내

- \*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- \*\* 수준향상이 없는 재신청 기업에 대해 기초사업으로 지원(기업당 수준별 1회 한정)
- (유형 2) 기초수준(2,000만원 내외)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%\* 지원
  - \* 지원 : 정부 50%(최대 1천만원), 대기업 50%
  - \*\*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

○ 의무사항

- (수준확인)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- (가점부여) 주관기관(협업기관)에서 도입기업 선정 시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가점(3점) 부여

□ 사업기간 : 최대 9개월(협약기간 협의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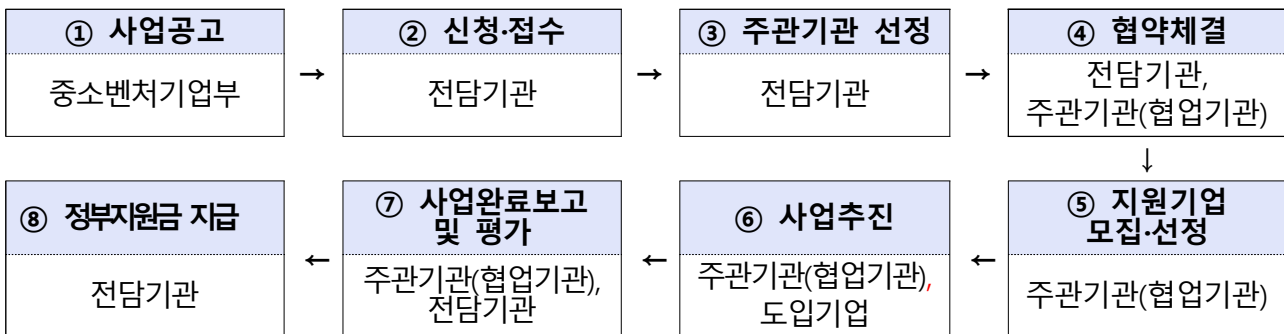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금) ~ 2021년 6월 30일(수) 17시까지 신청 마감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주관기관 아이디로 신청)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
2	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(안) 1부
3	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
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\*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,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평가

평가 항목		배점
사업전략의 적정성 (30)	- 사업목표의 적절성	10
	- 추진체계의 적정성	15
	-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	5
기대효과 (20)	-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	10
	-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	10
주관기관 역량 (50)	- 주관기관의 투자의지, 추진의지	50
합 계		100

## □ 기타사항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\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\*\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(권장)
  - \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(붙임1 참고)
  - \*\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 - \*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
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-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\*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
  - \* 단, '스마트화역량강화', '스마트 마이스터'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
  - \*\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3 :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]
- 스마트공장 구축\*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(기초 최대 11.2백만원, 고도화1 최대 32백만원 한도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  - \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  - \*\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- 주관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도 선정 가능하며, 해당기업은 필요 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
-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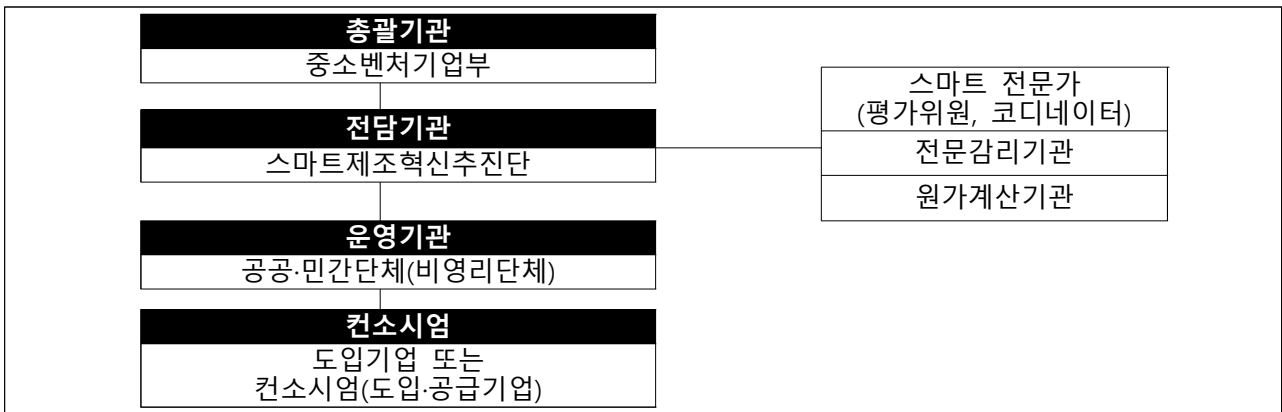
#### (4)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모집

※ 본 공고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중소·중견기업 모집은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 예정

#### □ 사업개요

-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유사 제조공정 중소·중견기업들의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

####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운영기관) 수요기업 발굴·선정, 우수 공급기업 발굴 및 관리,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안내, 구축현황 점검(중간·최종점검 등), 사후관리, 사업비 집행,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 등

#### □ 지원내용

- (운영기관)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  - 총 사업규모의 5% 이내 운영비로 책정 가능
- (도입기업) 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
지원분야 예시	지원내용 예시
식품	·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)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, 온습도관리시스템, HACCP 위생관리, 자동화 시스템 등
전자부품	·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·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)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
기계부품(자동차 등)	· 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,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·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 성능시험, 가상공정배치,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
기타	· 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) 섬유, 조선기자재, 도금, 인쇄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접합 등



□ 운영기관 신청자격

- 업종특화 스마트공장을 보급·확산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·민간기관
- \* 컨소시엄 참여 가능

□ 지원규모

-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및 운영기관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
- \* 운영기관별로 최소 10개 과제 이상의 신청수요 확보 필요

□ 사업기간 : 최대 9개월(협약기간 협의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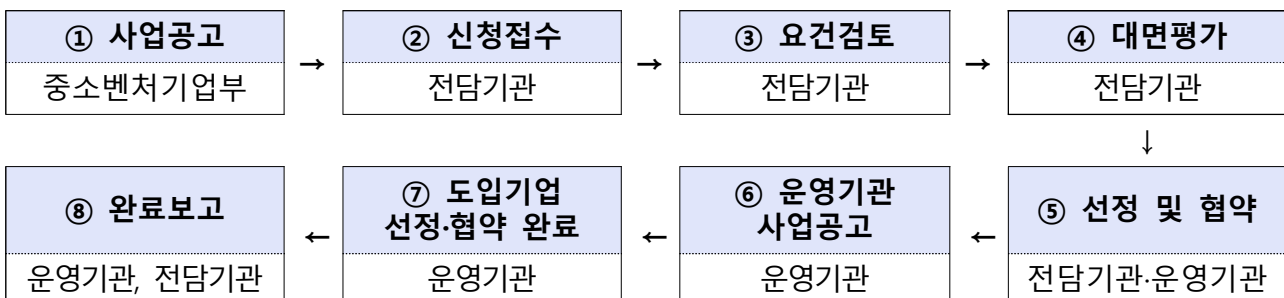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금)부터 3월 22일(월) 17시까지 신청 마감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)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
2	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계획서
3	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4	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(도입기업 모집용)

\* 관련양식은 <http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운영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,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
- (선정 시 평가 주안점) 수요과제 발굴역량,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안내 역량, 우수 공급기업 발굴 및 관리 역량, 신청업종과 운영기관과의 관련성,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

<심사평가 항목>

평가 항목		배점
사업전략의 적정성 (30)	-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절성	20
	- 해당 업종의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	5
	- 추진체계의 적정성	5
기대효과 (30)	- 업종 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, 보급·확산(수요발굴) 적정성	25
	-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	5
운영기관 역량 (40)	- 해당 업종과 운영기관 간의 연관성	10
	-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역량 (업종 공통솔루션 및 선도모델 발굴, 사업기획력 등)	30
합 계		100

- 가점 내용 :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(50%)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, 백신·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

## (5)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

### □ 사업개요

-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

### □ 지원내용

- 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

지원 분야	내용
로봇자동화 공정설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</li> <li>*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(로봇엔지니어링)</li> </ul>
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</li> <li>*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</li> <li>* 로봇 설치 및 시운전</li> <li>*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</li> </ul>
로봇활용 교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</li> <li>* 로봇시스템 유지·보수 관련 교육</li> <li>*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</li> <li>*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</li> </ul>
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</li> <li>*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</li> </ul>

### □ 신청자격

-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  - (도입기업)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 기업
    - \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- (공급기업)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(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)

□ 지원조건

-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3억원 지원(유턴기업 최대 5억원, 57개사 내외)
  - 금속가공, 기계,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
    - \* 도입기업에서 활용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
  -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 제조로봇 도입 지원 5개사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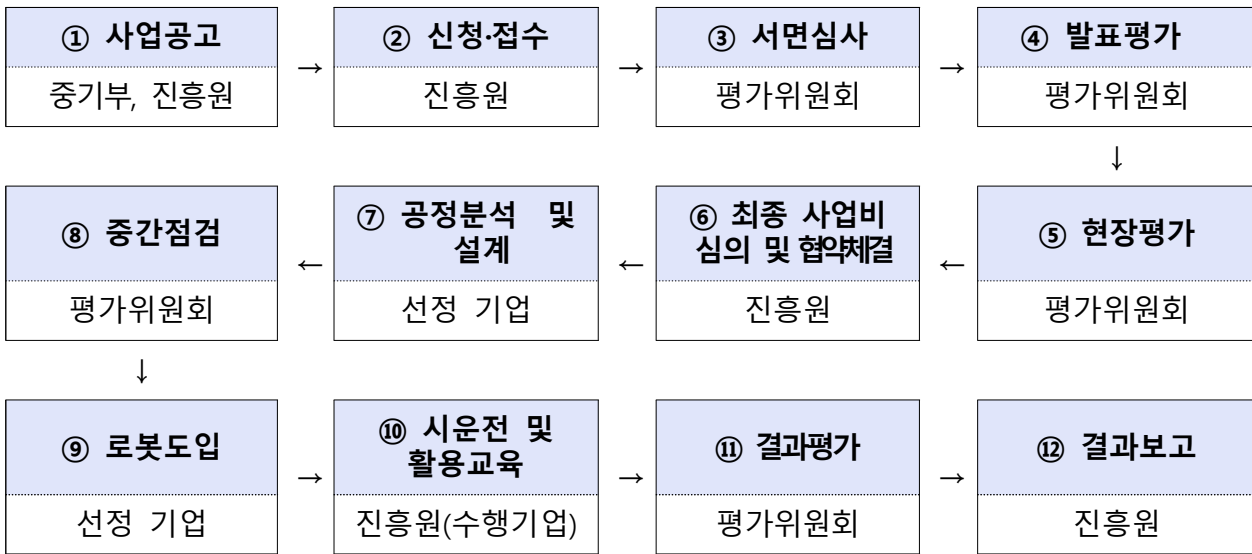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. 1. 22(금) ~ 2. 25(목) 17:00 까지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- 제출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	비 고	
필수 제출 서류	1	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부	지정양식
	2	사업자등록증 각1부	도입기업, 공급기업
	3	공장등록증 1부	도입기업
	4	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	도입기업, 공급기업
	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도입기업, 공급기업
	6	견적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및 비교견적 2부 (총 3부)	자유양식
	7	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(공급기업 작성분)	자유양식
	8	작업 현장 동영상 자료	자유양식(2분이내)
선택 제출 서류	9	노후로봇 증빙자료(로봇 구매증빙, 감가상각신고서, 로봇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품번사진 등)	자유양식 (노후로봇 교체지원시)
	10	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(산업통상자원부 발급) 1부	도입기업 (국내복귀기업 지원시)
	11	가점사항 증빙서류(스마트공장, 뿌리기업, 강소기업100, 스타트업100)	증명서 (해당 관리기관 발급분)
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(선정절차) 로봇 및 공정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(7인 내외)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
- (선정방법)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

<심사평가 항목>

평가 항목		배점
기술성 (40)	- 기술의 우수성 (신기술 적용 공정 등)	10
	-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(제품 규격의 구체성·명확성)	15
	- 타기업 파급성 및 표준 공정화 가능성	15
목표 및 성과타당성 (40)	- 사업 목표의 적절성(KPI기준)	20
	- 성과활용 계획(근거자료의 합리성·타당성)	20
수행능력 (20)	-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	10
	-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	5
	-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	5
합 계		100

\* 평가 기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, 평가위원회 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.

□ 가점내용(최대 6점) : ❶ 旣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(2점),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(무인이송로봇, 협동로봇, 양팔로봇 등) 활용 공정(2점), ❷ 뿌리 기업(2점), ❸ 강소기업100 선정기업(2점), ❹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(2점)

□ 지원 제외대상

○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\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,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< 부적격 사항 >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  | 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
|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|

## (6)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
### ① 참여기업 모집

#### □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보급·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 제시

#### □ 지원내용

- (스마트화 수준확인)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
- (고도화 전략 제공)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제공

#### □ 신청자격
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사업\*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정부지원으로 기 구축 후 자체 고도화를 통해 수준 상승한 기업

\* '14~'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(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)

#### □ 지원조건 : 수준확인비용 지원(기업당 80만원)

##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3월 2일(화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  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
2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\* 관련양식은 <https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제외대상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	

**2** 확인기관 모집

□ 목적

-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 및 수준확인제도를 수행할 확인기관 모집

□ 수행업무

구분	주요 역할
확인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·평가 수행</li> <li>○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</li> <li>○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·개발 지원</li> <li>○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</li> </ul>

\* 수준확인제도 수행 방안 등 논의를 위한 '수준확인기관 협의회' 운영 예정

- (심사원 양성 및 관리)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
- (기업 수준확인서 발급)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, 발급현황 관리



□ 신청자격

-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(기관) 또는 협회·단체

구분	세부내용
기본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</li> <li>- 스마트공장 교육 /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, 시설 보유</li> <li>- 『중소기업 기본법』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, 관련 협회·단체</li> <li>○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(교육과정 운영, 교재·강사관리,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) 보유</li> </ul>
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(컨설턴트, 심사원 등) 10명 이상 보유</li> </ul>
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공장(제조혁신, ICT, 로봇 등) 관련 업무 추진실적(컨설팅, 인증, 교육 등) 10건 이상 보유</li> </ul>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. 1. 22(금) ~ 2. 25(목) 17:00 까지
-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사업공고 → 확인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
2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3	보유인력,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
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\*\* 기존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도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 필요

## (7) 스마트화 역량강화

### ① 지원기업 모집

#### □ 사업개요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

#### □ 지원내용

-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
  - 기본 및 심화 컨설팅 :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·상담 및 지도
    - \* 기본(5일) :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, 개선방안 도출 3일, 심화(10일) :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, 요소별 세부 진단 3일, 개선방안 도출 5일
  - 원포인트 멘토링 :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~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
    - \* 애로사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(기업당 최대 2회 지원)

#### □ 신청자격

-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·완료 기업

#### □ 지원조건

-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

구 분	컨설팅 지원		원포인트 멘토링
	기본 컨설팅	심화 컨설팅	
총 비용	500만원	1,000만원	100만원
지원금액	250만원	500만원	100만원
자부담(지방비+기업)	250만원	500만원	-

#### □ 사업기간 : 최대 4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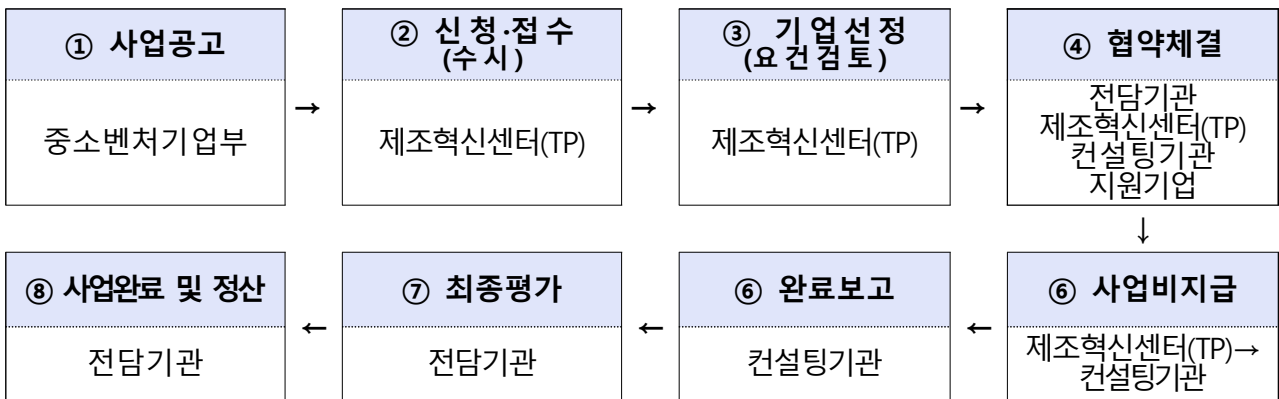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'21년 1월 22일(금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
  - \* 지역별 배분된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)
-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
2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\* 관련양식은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 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 제외대상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\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	

## ② 컨설팅기관 모집

### □ 목적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·등록

### □ 주요내용

- 모집기관 : 10개 기관 내외
  - \*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
  - \*\* 지역기반 컨설팅 기관 우선 선정
- 컨설팅 비용 : 과제당 최대 1,000만원(부가세 별도)

구 분	컨설팅 지원		원포인트 멘토링
	기본 컨설팅	심화 컨설팅	
총 비용	500만원	1,000만원	100만원
지원금액	250만원	500만원	100만원
자부담(지방비+기업)	250만원	500만원	-

### □ 수행업무

-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
  -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·지도
  -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

### □ 신청자격

-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(기관) 또는 협회·단체

구분	세부내용
기본요건	○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,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
인력	○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
실적	○ 스마트공장(제조혁신, ICT, 로봇 등)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. 1. 22(금) ~ 2. 25(목) 17:00 까지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컨설팅기관 아이디로 신청)
-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Pool 등록 신청서
2	컨설팅 수행계획서
3	보유인력 및 추진실적,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

\* '20년 컨설팅기관으로 기 선정·수행한 기관은 평가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결정

□ 참여 제외대상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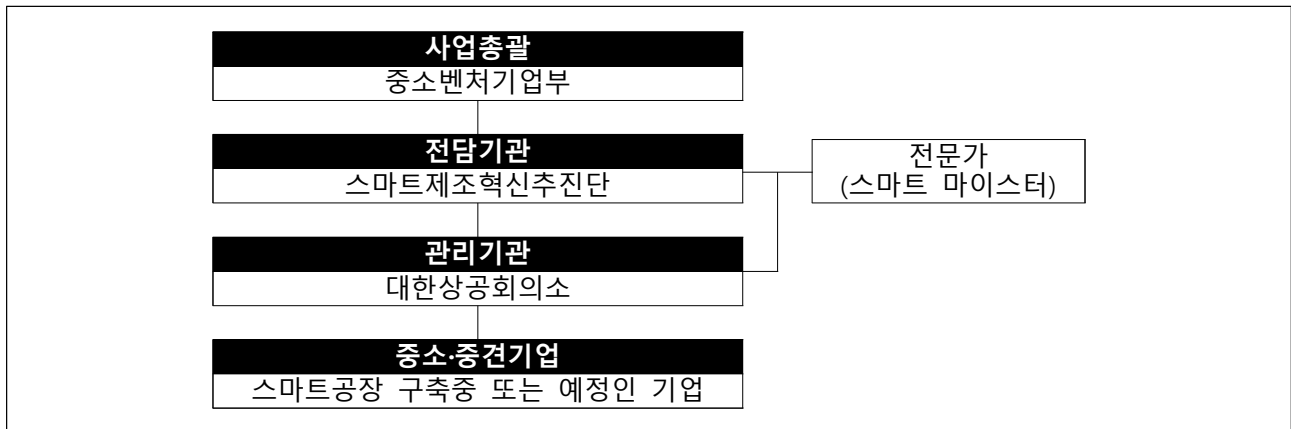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## (8)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

### □ 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, 구축과정 애로 해결, 구축 후 활용도 제고 및 고도화전략 수립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도
-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

### □ 추진체계



- (전담기관) 총괄역할 수행 등
- (관리기관) 기업 요건검토 및 선정, 마이스터 매칭, 정부지원금 지급 등 사업관리

### □ 지원대상 및 조건

-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구 분	지원횟수, 수당	정부지원금 비중	기업부담금 비중
스마트 마이스터	24회, 회당 35만원	90%	10%

#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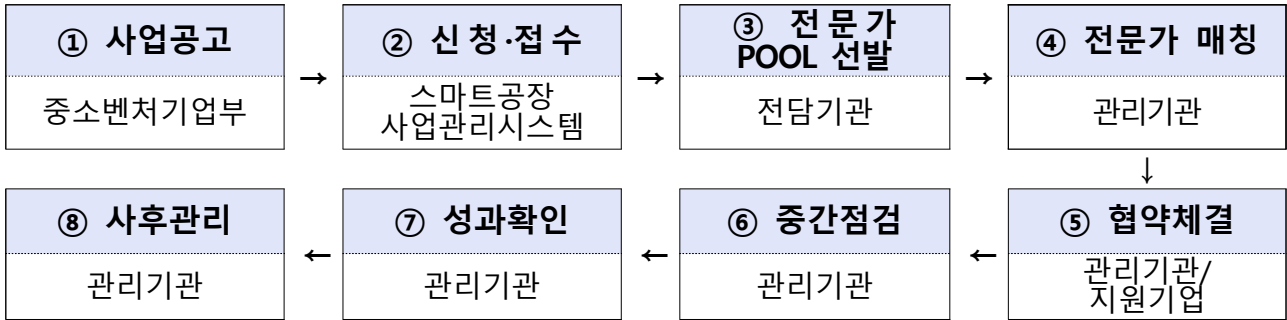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2021년 4월 1일(목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

#### 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개인·기업정보활용 동의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)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제외대상

- |  |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휴·폐업중인 기업</li> <li>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</li> <li>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</li> </ul> |
|--|--|

## (9)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

### □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·고효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저변을 확산

### □ 지원내용

- (공동활용 솔루션 과제)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

- \* 예시)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, 자재관리, 수발주, 납품, 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
- ② 정부(지자체, 공공기관)와 연계한 신고, 승인, 배정 업무
- ③ 자원관리, 제품개발, 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

- (지원과제) 5개 과제

### □ 지원조건

- 총 사업비의 70%이내에서 최대 1.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

구분	사업기간	지원한도	민간부담금	공모유형
공동활용 솔루션 과제	최대 6개월	최대 1.4억원 (정부지원금)	총 사업비의 30% 이상 (도입기업 현금 부담)	자유공모

- 솔루션 구축 후 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(경영혁신플랫폼) 이용 가능

-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2년 경과 후, 활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

구분	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		비고
IaaS	서버 및 스토리지 등	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	최대 2년 지원
PaaS	OS	Linux 계열(CentOS, Ubuntu 등)	
SaaS	공동활용솔루션	총사업비의 최대 1.4억원 지원	-

\* 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



## □ 신청자격

-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\* 또는 중소기업\*\*

\*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(전국·지방·사업), 협동조합연합회(업종·지역), 업종별 협회 및 단체

\*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구분	공동활용솔루션
도입기업 (주관기관)	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 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(4개사 이상)
공급기업	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
컨소시엄 구성	도입기업,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)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. 1. 22.(금) ~ 2021. 3. 10.(수) 17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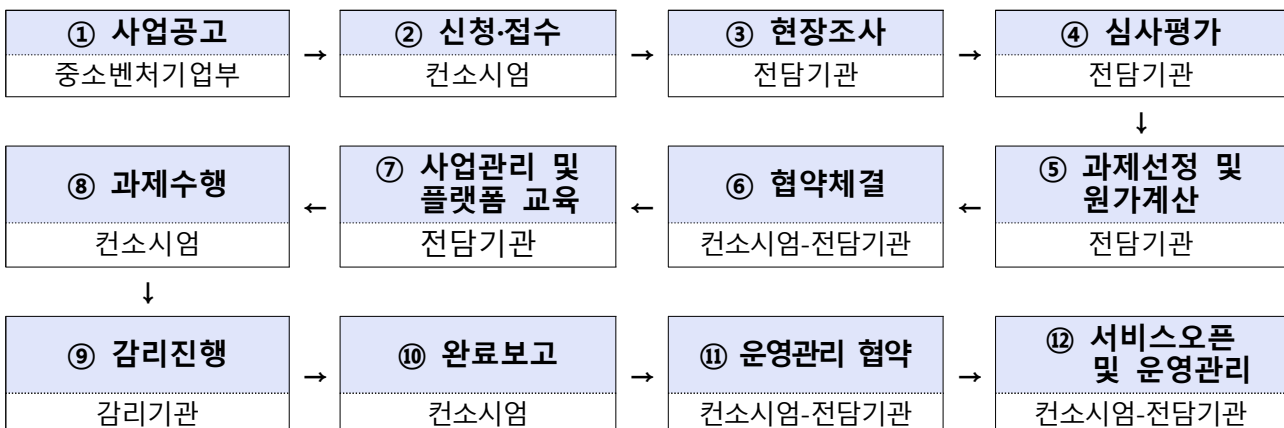
-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접수 ( [it.smplatform.go.kr](http://it.smplatform.go.kr) )

\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-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사업계획서 (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)
2	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각1부 (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」 또는 「학력, 경력, 자격 관련 증명서」 등)

## □ 지원절차



## □ 지원제외대상

- '13 ~'20 동사업의 지원을 받은 도입기업(협·단체 또는 중소기업) 신청 불가
-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\*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

### < 부적격 사항 >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  | 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
|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 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|

## □ 기타사항

-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
  - 협·단체의 회원사가 1,000개 이상인 경우 : 2점
    - \* 도입기업이 협단체인 경우에만 해당
-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
  - \*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
- 솔루션 구축 후 경영혁신플랫폼 미이용 시, 성과조사 및 활용실적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데이터 제출 필수

---

## (10) 스마트공장 사후관리

---

### □ 사업개요

-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

### □ 지원내용

- (긴급복구형)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AS 지원
- (성장연계형)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
  - \*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,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 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

### □ 지원내역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/W 및 H/W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

### □ 신청자격

- (공통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\*을 만족하는 기업
  - \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 → 공고문 붙임2 참고
- (성장연계형)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시설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

### □ 지원조건

- (긴급복구형)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- (성장연계형)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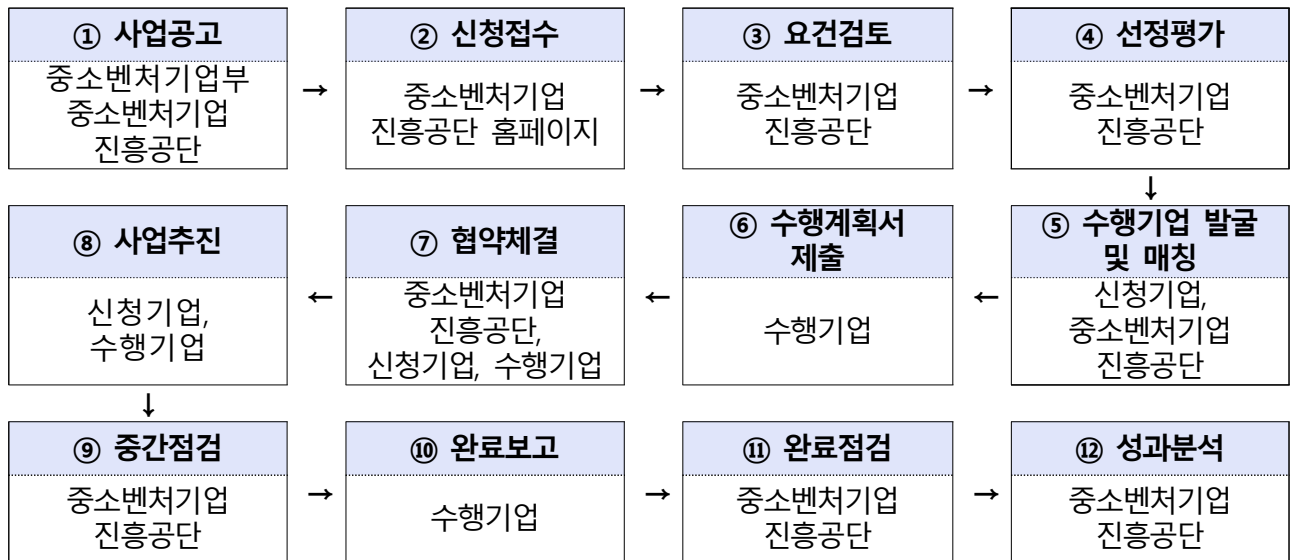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기간

- 최대 6개월 이내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)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1년 1월 22일(금)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
-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  -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mes.or.kr>)에서 신청
  - \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지원사업 → 기타 →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→ 온라인 사업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- (제출서류) 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신청서(사후관리)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법인, 개인) ③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\*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④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완료보고서
  - \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를 신청서에 기재
  - \*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(<http://www.kosme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
- (선정평가) 외부전문가 및 전담기관의 내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,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 지원성과 등을 평가
- (선정방법)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대상으로 적합하고, 평가항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

□ 지원제외대상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- 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· 휴·폐업중인 기업         | ·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            |
|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 ·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|

## IV. 문의 및 연락처

### □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

구분	기관명	연락처
공고내용 문의	중소벤처기업부	국번없이 1357
신규구축 및 고도화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지역별 문의처 참조
디지털 클러스터(일반형)		042-388-0859
대중소 상생형		042-388-0861
업종별특화		042-388-0853
스마트공장 수준확인		042-388-0856
스마트화 역량강화		042-388-0852
스마트 마이스터 운영		042-388-0852 02-6050-3855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		1644-1736, it.smplatform.go.kr
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	한국로봇산업진흥원	053-210-9552~5
스마트공장 사후 관리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055-751-9292, 9771

### 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(제조혁신센터, TP)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	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2-944-6057
부산	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1-974-9155
대구	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602-1859
경북	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819-3045~6, 3055~9
포항	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4-223-2242/2245
광주	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7514
전남	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1-729-2831~4
제주	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4-720-3074
경기	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00-3100
경기북부	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39-5140
인천	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2-260-0626~9/0661~4
대전	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2-930-4351
충남	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1-589-0705
세종	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4-850-2152/2154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910/8588/8627
강원	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3-248-5682
충북	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3-270-2812
전북	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3-832-6049
경남	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1811-8297

□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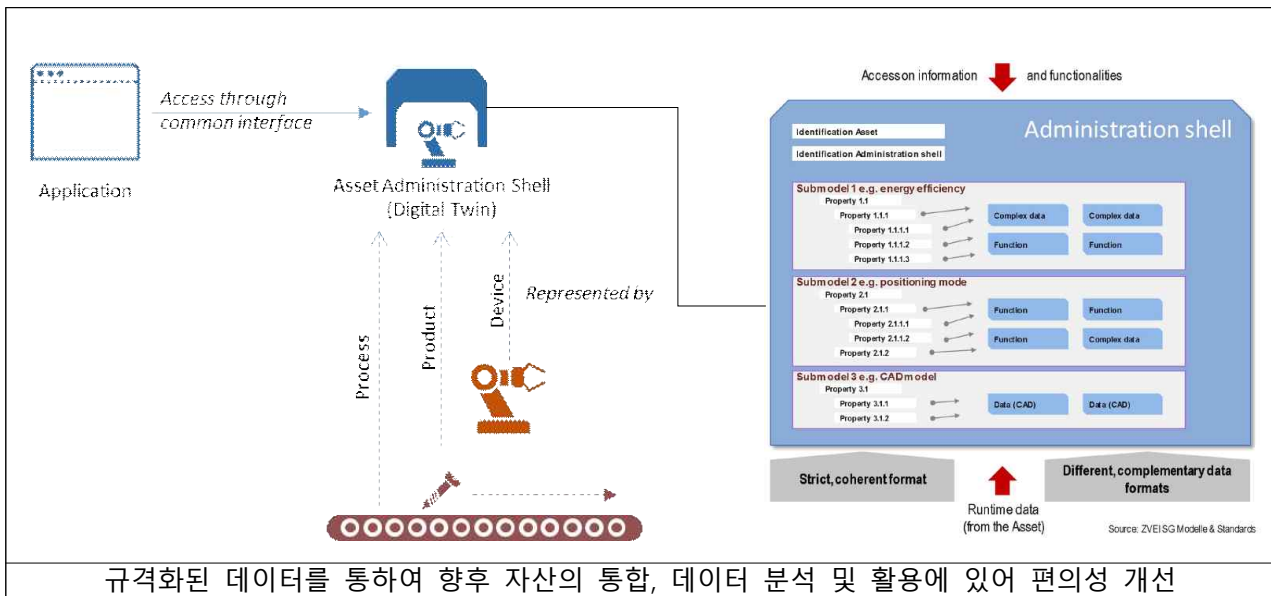
기관명	지역	연락처
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서울지역본부	02-2106-7454
	인천지역본부	032-837-7031
	경기지역본부	031-260-4931
	강원지역본부	033-269-6942
	충북지역본부	043-903-9356
	대전세종지역본부	042-281-3746
	충남지역본부	042-481-4586
	대구지역본부	053-656-8176
	경북지역본부	054-440-5912
	울산지역본부	052-703-1123
	부산지역본부	051-630-7402
	경남지역본부	055-270-9769
	전북지역본부	063-276-8218
	광주지역본부	062-600-3061
	전남지역본부	061-331-8707
	제주지역본부	064-754-5157

□ **Asset Administration Shell (자산관리셸) 이란**

○ Asset Administration Shell(AAS; IEC 63278 제정중)는 공장 내 자산\*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합 표현 방식

- 각 자산의 정보와 기능에 관하여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자산/데이터 간의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줌

\* 자산(Asset) : 스마트공장의 장비/설비 등을 포함한 사물



□ **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 시 필요 활동**

- (OPC-UA 통신 활용 중인 경우) AAS 작성 도구\*를 활용하여 장비/설비 AAS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정에 규격 적용(데이터 맵핑 등)
- (OPC-UA 통신 미활용 시) OPC-UA 변환 솔루션/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통신 프로토콜 통합 후 AAS 데이터 작성 및 규격 적용

\* 작성 도구 및 관련 교육과정 제공 예정(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안내 예정)  
(문의사항 :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기획실 042-388-0834)

□ **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의 기대효과**

- 향후 AAS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/솔루션/서비스 도입 및 증설 시 구축 비용 및 기간 감소, 기업 내 자체 데이터 분석 시 개발 편의성 개선



## 붙임 2

## 소기업 규모 기준

\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*붙임 3****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**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)
- (교육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- (교육비용) 무료 또는 유료
- (신청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<http://sbti.kosmes.or.kr>)를 통해 신청,  
※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
**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**

운영과정 구분	연수원명	전화번호
집합교육 웨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	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	031-490-1472
	호남연수원 (광주)	062-250-3000
	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	053-819-5001
	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	055-548-8045
	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	033-550-5000
온라인 교육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	031-490-1288